

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「구촌지구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외 2건」 CCTV 설치에 대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1월 10일

영 동 군 수

1. 사 업 명 : 구촌지구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외 2건
2. 행정예고 기간 : 2021. 11. 10. ~ 11. 29.(20일간)
3. 의견제출 기간 : 2021. 11. 10. ~ 11. 29.(20일간)
4. 공고방법 : 영동군청 홈페이지
5. 관련근거
 - 가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 - 나.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 - 다.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
6. 설치예정 장소

연번	설치장소	수량(대)	비고
1	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47-2번지	1	
2	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520-4번지	1	
3	영동군 황간면 우천리 624-3번지	1	
4	영동군 황간면 우천리 845번지	1	
5	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867-1번지	3	

7. 의견제출

가.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영동군 안전관리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팩스(043-740-3909)

다. 제출기한 : 2021. 11. 29까지

라. 보내실 곳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, 영동군청 안전관리과

마. 문의처 : 영동군청 안전관리과 재난예방팀(043-740-3934)

바.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붙임 의견서 1부. 끝.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1년 11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영 동 군 수 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